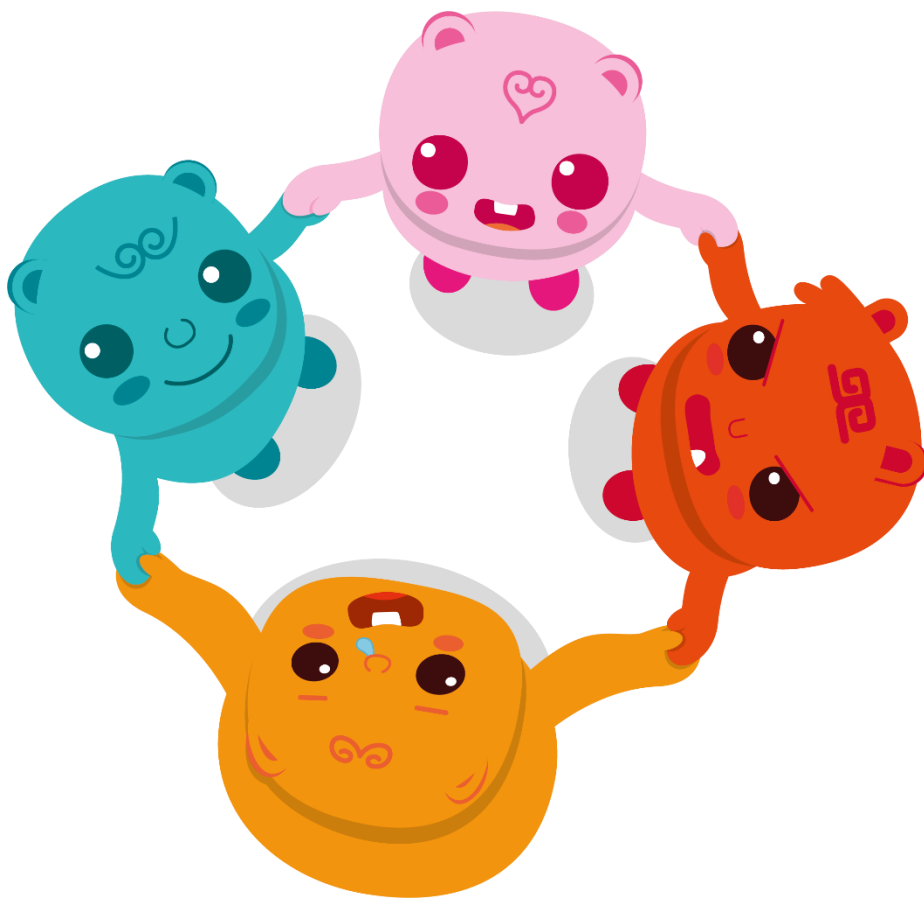


장기요양 함께 Together

발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운영부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 4층 TEL 053-650-9900



h·well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단 소식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this news

경북권역 장기요양 종사자 건강증진 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기형)는 지난 6.18.(화), 6.25.(화) 양일간 경북 안동과 포항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장기요양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및 전신 스트레칭 실습 등)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노인학대 예방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토크 콘서트는 '뷰티풀 라이프'를 주제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돌봄 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였다는 호응을 얻기도 했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힐링토크 콘서트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건강마을 조성」 프로그램 운영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기형)는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경북 의성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노후의 재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건강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26.(수)에는 의성군 춘산면 옥정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듭공예(가방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마을주민 어르신들 25명이 참여하여 전문 강사의 안내를 받아, 소근육 운동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직접 매듭을 묶어 가방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건강 취약 계층인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경북동부권역 가족상담 업무 담당자 간담회 실시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기형)는 6.28.(금) 영천지사 2층 회의실에서 경북동부권역 가족상담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경주운영센터 등 8개 운영센터 가족상담 업무 담당자 8명이 참석하여 가족상담 입문직원 대상 경력직원 멘토링 활동, 가족상담 대상자 선정 노하우, 개별상담기록지 전산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건의사항 등 가족상담 상담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상담은 자택 생활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기술을 제공하고 교육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족상담을 통하여 가족 수발자의 부양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운영센터 가족상담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운영센터 가족상담 업무 담당자가 보다 내실 있게 가족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할 것이다.



장기요양 수급자 재가급여 이용 확대를 위한 TBN 대구교통방송 출연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기형)는 7.3.(수) 도로교통공단 TBN 대구교통방송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재가급여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 Talk’에 출연하였다.

이 날 지역본부 이용지원 업무 담당자가 출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상담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관련 사업(이웃사랑 후원자 발굴 사업 등), 2024년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모형 시범사업, 2025년 장기요양 수급자 지문 사전등록사업 등을 안내하였다.

차분한 목소리로 사업설명,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 등 조리있게 진행하여, 이용지원 상담관리 절차 및 종류, 가족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내년 사업 등도 미리 안내하면서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Aging In Place)’을 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치매전문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뇌건강교실’ 운영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기형)는 7.3.(수), 7.10.(수) 2회에 걸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뇌건강교실’을 운영하였다.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교구를 활용한 치매인지자극 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주요내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재미있고 유익하였으며,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새로운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4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표어 공모전 시상식 실시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기형)는 7.4.(목) 지역본부 1층 어울림터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한 ‘2024년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대구경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165편의 홍보 표어가 접수되었고 이 중 1차 서면심사, 2차 설문조사를 거쳐 6편의 표어가 최종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1편(돌봄전문가, 요양보호사는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우수상 2편(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돌봄전문가, 우리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행복지킴이, 건강지킴이, 노후지킴이), 장려상 3편이 선정되어 상품 수여 및 표어의 의미를 공유하고,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홍보 표어는 추후 공단 내 각종 설명회, 지사 전광판 등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 책임감, 전문의식 등 함양을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4.7.1.자로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를 확대한 것이며, 고시 제67조제3항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 전)에는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근무종료일부터 30일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신설 조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해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적용된다.

위의 고시 개정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및 법령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개정내용에 관한 Q&A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 함께해요!

Q 노인학대의 종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Q 노인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전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구글플레이어 다운로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따뜻한 돌봄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돌봐드릴게요.



요양보호사는 이런 업무를 해요!



신체 활동지원

- 식사하기, 체위변경 및 이동하기, 화장실이용 등
- 개인위생활동 및 몸단장,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 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등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식사준비 등
- 말벗, 의사소통 도움, 외출 동행 등

※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보호사는 상호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과 **관련 없는 업무**(김장, 창고정리, 애완견돌보기 등) 요구
- **가족을 위한 업무**(가족의 식사, 빨래 등)를 요구하고, 거부 시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
-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 농담 및 상하의 탈의 등 부적절한 행동
- 반말·욕설 등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수급자(가족)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해고)** 요구

“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모두의 고마운 돌봄 전문가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
웹진 소식지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후날씨
맑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

- 수사방문 서비스
-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 통합재가서비스 및 재택 의료서비스 확산



함께하는 든든한 돌봄

- 재가 수급자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 가족돌봄 휴가 활성화



앞서가는 똑똑한 돌봄

- 돌봄 로봇
- 스마트 케어기술(IOT)